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09
----------	-------

발의연월일 : 2026. 1. 29.

발 의 자 : 김승원 · 김종민 · 민병덕
김남근 · 임호선 · 이주희
이정문 · 서미화 · 복기왕
강준현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채권 투자를 통한 외화자금 조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그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국외에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또한 외화표시채권처럼 이자 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의 해외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여 국내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외화표시채권”을 “외화표시채권 및 국외에서 발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 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 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 한다.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 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 ----- ----- -----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 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u>외화표시채권</u> 의 이자 및 수수 료	1. ----- ----- <u>외화표시채권 및 국외에서 발 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 저당증권</u>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